힘이 되는 평생 친구, 보건복지부

보건복지부

보 건 복 지 부

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
수신 수신자 참조
(경유)
제목 의료기관 자가발전시설 설치운영 세부기준 알림

1.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-7290(2020.11.26.), 3604(2021.06.09.)호 관련입니다.

2. 우리 부(의료기관정책과)에서는 응급 수술 등 비상상황 시 자동으로 전원을 공급하는 **"의료기관 자가발전시설 설치·운영** 세부기준'을 마련하여 귀 단체를 포함한 보건의료단체에 권고하고자 합니다.

- 각 단체에서는 회원 의료기관 등에 안내하여 주시고, 응급 수술 등 비상상황을 대비한 자가발전시설 설치·운영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* 의료기관 **자가발전시설은 화재 등 비상시 적정한 진료 및 환자의 생명 유지를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필수시설**로 규정

붙임 : 1의료기관 자가발전시설 설치·운영 세부기준(권고안) 1부. 끝.

보건복지부장관

수신자 대한의사협회장, 대한한의사협회장, 대한병원협회장, 대한한방병원협회장, 대한요양병원협회장, 대한치과병원협회장, 대한치과의사협회장

행정사무관 **노호영** 의료기관정책과 전결 2021.6.22.
협조자 과장 **오창현**

시행 의료기관정책과-3895 접수

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(정부세종청사 10동) / http://www.mohw.go.kr

전화번호 044-202-2471 팩스번호 044-202-3926 / hybiz92@korea.kr / 대국민 공개